

#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김진 학의원의외 12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4. 6. 27

나. 회부일자 : '94. 6. 28

3. 제안이유

- 직접 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이익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조성을 원활히 하고,
- 용자대상사업을 댐주변사업 및 농촌도로사업으로 확대, 지방자치 완성에 따른 준비단계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기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, 공급하고자 하는데 목적 (안 제1조)
-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할 수 있다는 항 신설 (안 제3조 제3항)
- 용자 순위중 댐주변 사업과 농촌도로 사업을 추가삽입 (안 제10조)
- 위원으로 농업정책과장과 도시개발과장을 추가 포함 시킴.

## 5. 검토보고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등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활한 자금의 조성과 용자지원등 공공성과 지역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큰 사업에 대하여 장기저리로 용자지원해 줌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기금의 순환으로 전 시군에 지원하여 시군의 재정자립 촉구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내용을 보면

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 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으며

기존 용자순위에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에만 국한된 것을 댐주변사업과 농촌도로사업도 포함 수혜범위를 확대하고

용자금의 이율을 상·하수도 사업과 댐주변사업은 년리7%, 여타사업은 년리 8%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용자대상 사업주체의 재정상태, 용자사업의 공공성, 수익성등을 고려 3% ~ 10%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

기금관리위원회 위원도 농업정책과장과 도로과장을 추가 포함시키는등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하기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